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24 선고 2019가단6698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라 담당변호사 여인협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우

변론 종결2020. 7. 23.

판결 선고2020. 9. 24.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제2008호로 공탁한 21,479,6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108,451,2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을 한 때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공탁물을 수령한 피공탁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4931 판결 등 참조). 이때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는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20.자 95마190 결정 등 참조).

나. ① 대구 서구 D 대 733.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E 지분 중 51.5/73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82. 10. 23. 접수 제68522호로 1982.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② 원고는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2019년 금제2007호로 피공탁자를 C으로 지정하여 108,451,270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원인사실로 "공탁자는 A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에 편입되는 피공탁자 소유의 별지기재 토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108,451,270원을 현실제공하려 하였으나 수령불능이므로 공탁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③ 그리고 피고 C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그런데 피고 C이 제출한 2020. 2. 25.자 답변서 2항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대구광역시지방법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의 적법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는 점, 즉 이 사건 부동산 지분소유권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탁이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수용재결이 무효이거나 실효되어 이 사건 공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형철

별지